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14:00 배포 2026. 11. 24.(화) 14:00

국제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일부 면제

- 11. 2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내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으로 경기인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의무 규정도 1년 추가로 유예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제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이하 체육회)는 체육지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 문체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국제지도자 자격만 갖추고 활동하던 지도자는 내년부터 경기인 등록을 할 수 없어 현역 지도자는 경기 일정상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자격 취득 절차를 모두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국제지도자 자격 보유자 및 세계대학경기대회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과정 일부 면제 확대

이에 문체부는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국제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목별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국내 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포함)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 시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의 일부를 면제한다.

국가자격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지도자 자격의 인정은 '종목단체 자체 평가 → 대한체육회 검토심의 및 추천 → 문체부 장관 인정 고시' 순으로 진행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연구를 통해 마련한 공신력과 엄격성, 갱신성, 호환성 등 4대 평가 기준을 통과한 국제자격만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 일부 면제 대상인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한 대회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AF) 주최 대회 참가 경력 외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참가 경력을 추가로 인정한다. 세계대학경기대회는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임에도 주최기관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대상 규정에서 빠져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면제 대상이 되는 국제대회를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개정 시행령이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국제지도자 자격 인정 고시 제정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면제 혜택은 '27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의무 규정 1년 추가 유예 예정

체육회도 변경된 제도에 따른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해, 경기인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의무 규정을 1년 추가로 유예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육지도자 자격증 외 인정되는 등록 자격으로, ▲기존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에 더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체육 분야)을 추가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제도가

없는 종목에 한해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발행하는 지도자 자격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지도자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제도 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제도가 신규로 도입되는 종목의 경우, 도입 연도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기인 등록 및 대회 출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가진 지도자는 자격 취득 부담을 줄여 일선 지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공백을 최소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승훈 (044-203-3111)
		담당자	사무관	안승연 (044-203-3117)
담당 부서	체육국 스포츠인권복지과	책임자	과장	박진석 (044-203-3191)
		담당자	사무관	이호영 (044-203-31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